

의정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56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92,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9. 8. 31.부터 2021. 4. 2.까지 주식회사 C와 거래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30,092,758원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6호증은 원고가 고소를 하였다는 것일 뿐 이에 대한 수사결과는 보이지 않고, 갑 제9호증은 물품대금을 변제받는 주식회사 C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게 내용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에서 별다른 증명력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